

## 【총 리 령】

- 총리령제1276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3
- 총리령제1277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7
- 총리령제1278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4
- 총리령제1279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7

## 【부 령】

- 행정자치부령제70호(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 18
- 국토교통부령제310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22
- 해양수산부령제191호(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4

## 【고 시】

- 국가보훈처고시제2016-3호(지정<해제> 현충시설) ..... 28
- 외교부고시제2016-2호(여권의 사용제한 등) ..... 30
- 법무부고시제2016-160호(귀화허가) ..... 32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73호(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 35
- 관세청고시제2016-40호(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 ..... 76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4호(국적취득) ..... 77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7호(국적취득) ..... 77
-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5호(국적취득) ..... 77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국적상실) ..... 77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6호(국적상실) ..... 78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6호(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변경>) ..... 78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7호(도로구역 결정<변경>) ..... 79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8호(접도구역 지정) ..... 80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9호(지형도면) ..... 81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6호(도로구역 결정<변경>) ..... 81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90호(2016년도 원주청 국도 ITS 사업 실시계획) ..... 83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5호(하천점용 연장허가) ..... 88

(이면 계속)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5호(사설항로표지 신설).....	8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7호(하천수 사용허가) .....	89

##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90호(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	90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48호(전자금융업 등록).....	92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49호(금융투자업 등록).....	92
○기획재정부공고제2016-77호(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2
○교육부공고제2016-137호(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93
○교육부공고제2016-138호(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4
○교육부공고제2016-139호(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5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47호(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96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39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97
○환경부공고제2016-432호(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 입안예고).....	97
○환경부공고제2016-434호(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97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24호(신기술지정 신청).....	98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04호(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99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82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100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83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10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36호(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101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52호(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02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23호(해기사면허 행정처분<면허 취소> 공시송달) .....	10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47호(공시송달).....	104

##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129호(보조금 지급).....	104
-------------------------------------	-----

##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6-245호(공시송달) .....	105
----------------------------------	-----

## 【상 훈】

○서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06
----------------------	-----

##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	106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 .....	106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 .....	107
○결정(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107
○대차대조표(한국은행) .....	112

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조사 신청 기간 연장

2. 주요 내용

- 2015년 12월 31일까지인 피해조사 신청기간 삭제

3. 의견제출

-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56), FAX(044-201-6765), 전자우편 : indif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2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우주개발(주), ② (주)케이씨씨건설, ③ (주)한국종합기술

나. 전화번호 : ① 043-259-1226, ② 02-513-5716, ③ 02-2049-2625

2. 명칭 : 워터튜브를 이용하여 밀 장전하는 노천발파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기존기술은 천공경과 폭약경의 차이에 의한 공간으로 인해 발파 효율이 감소(디커플링 효과)되며 파쇄도가 불량하고 진동 및 소음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신청기술은 발파공 내부에 워터튜브를 삽입하고 천공경과 폭약경의 공간에 물을 주입하여 폭약을 밀장전함으로써 폭약 에너지의 전달률을 높이며, 대부분의 에너지가 대상 암반에 등분포 형태로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공당 파쇄량을 증가시키며 진동 및 소음을 감소시켜,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발파공법이다. 또한 밀 장전에 의해 폭약의 변형을 억제하고 정치가 가능하며 전색 다짐 시 각선을 보호할 수 있는 발파공법이다.

#### <범위>

천공된 발파공의 내부에 워터튜브와 폭약을 삽입하고 기폭약포와 폭약을 순차로 장전한 후 워터튜브의 내부에 장약장 높이까지 물을 주입하고 상부를 골재로 전색한 후 기폭약포를 기폭 시켜 대상암반을 파쇄토록 하는 노천 발파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04호

「신항만건설촉진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신항만 기능의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도록 신항만 정의를 조정하고, 신항만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 등 민간참여 확대방안의 마련, 신항만건설사업 절차정비·규제완화 등 미비점 보완을 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신항만 기능의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항만의 정의를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신항만 사업에 항만배후단지사업을 추가함

나. 신항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타법률과 중복지정 등의 경우에는 신항만에 관하여는 타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